

NEWSLETTER 735

Nov 30, 202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류검사의 효율성 증대 및 수산물에 대한 안전강화 등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습니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주요 개정사항

1. 서류검사의 효율성 증대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사진을 추가하여 서류검사의 효율성 증대

현 행	개 정
<p>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p> <p>① (생략) 1. (생략) <신설></p>	<p>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p> <p>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가. 별표 9 제2호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나.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하는 수입식품등</p>
<p>제33조(검사결과 등의 공개)</p> <p>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p> <p>3. 제1항제3호의 경우: 제품명, 제품 유형,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수출업소, 제조국·생산국,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 원재료 정보(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첨가물만 해당한다), 수입신고일(수입신고인이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인 경우에는 그 대행을 의뢰한 영업자를 말한다) 및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자</p>	<p>제33조(검사결과 등의 공개)</p> <p>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현행과 같음)</p> <p>3. 제1항제3호의 경우: 제품명, 제품 유형,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수출업소, 제조국·생산국,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 원재료 정보(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첨가물만 해당한다), 수입신고일(수입신고인이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인 경우에는 그 대행을 의뢰한 영업자를 말한다),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자 및 제2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제출한 사진</p>

2. 수산물에 대한 안전강화

- 종전에는 정밀검사를 받은 수산물의 생산국·품명·수출업소가 같으면 5년 이내 다시 수입할 때 정밀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던 것을 해외제조업소가 같다는 조건을 추가하여 수산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 ([별표 10] 제4호 다목)

3. 시설기준 완화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등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 ([별표 7] 제1호 가목 단서조항)

4. 행정처분 기준을 별도로 신설

- 수입신고를 대행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별도로 신설 ([별표 13] II.개별기준 - 제3호 다목)

II. 시행 일자

- 시행일 : 2022년 11월 25일

※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

1. 제26조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 : 2023년 5월 26일
2. 별표 10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 2023년 11월 26일

I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신규조문 대비표

[붙임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문 개정이유

I Contact



박영기 관세사
T 070-4353-1531
E ykpark@esein.co.kr



노규현 관세사
T 02-462-8278
E ghnoh@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